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발행일 2025. 11. 11.

디지털 시대 정보기본권 강화를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일시 | 2025년 11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실

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주관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사단법인 오픈넷,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목차

목차	3
프로그램	4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5
인사말 윤복남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7
발제: 정보인권 관련 헌법개정 논의경과 및 쟁점	8
토론1: 인공지능 한계와 정보인권의 헌법적 과제	16
토론2: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20
2025년 헌법개정에서 담아야 할 과제	20
토론3: 정보문화 향유권과 과학·문화권	27
토론5: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3
토론: 정보기본권 헌법보장의 필요성	36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를 국회의원 이용우 입니다.

오늘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귀중한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와, 주관을 맡아주신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발제를 맡아주신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의 최호웅 변호사님과, 토론자로 나서주신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님,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님, 윤희기 오픈넷 연구원님,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님, 장선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님, 그리고 서채완 변호사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정보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하려 했습니다. 알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의무 등은 당시에 지금도 절실한 권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개정은 무산되었고, 7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판단합니다. 우리가 제공하지 않은 정보까지 인공지능은 추론하고 생성합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은 정보를 독점하고, 국가의 감시 기술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고, 편향된 데이터는 차별을 재생산합니다.

2018년 우리가 논의했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내가 제공한 정보를 내가 통제할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나에 관한 정보', 내가 제공하지 않았지만 추론된 프로파일, 비식별 데이터를 결합해 생성된 정보까지 통제할 권리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에 대한 통제권, 알고리즘의 편향과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인공지능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이 모든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 역시 민주주의의 토대입니다. 국가와 공공기관이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에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공공성이 있는 정보를 생산·기록하고 보존하며 공개할 의무를 져야 합니다. 저도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재해조사의견서 등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수 차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인간 존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정보기본권은 현대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다른 모든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가 헌법개정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시민과 전문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헌법개정 논의에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국회의원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을)

인사말 윤복남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윤복남입니다.

정보인권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사회가 함께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 주요 국가들이 물적,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앞다투어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제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보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는 희석되고 있으며, 기술로 발생하는 편향이나 차별은 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시대에도 사회구성의 기초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알고리즘 결정 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 인공지능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과학기술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공정하게 이익을 얻을 권리, 그리고 정보문화를 향유할 권리 등은 헌법이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인공지능시대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탱하는 새로운

헌법적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대응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헌정 질서를 재정립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존에 주로 논의되어 왔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등의 기본권 뿐만 아니라, 정보문화향유권,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 등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시민들의 다양한 기본권을 깊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논의가 인공지능시대를 맞는 87년 헌법체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헌법적 사회계약’을 시민의 손으로 다시 써 내려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공동대표 윤복남

발제: 정보인권 관련 헌법개정 논의경과 및 쟁점

- 최호웅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1. 들어가며

- 본 발제는 정보인권 관련 기존 헌법개정 논의((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당시 정보기본권의 내용으로 언급된 △알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정보문화향유권 △국가의 정보격차 해소의무 등에 대한 개정안 취지와 찬반 논거 핵심내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당시 예상되지 못한 급격한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활용에 따라 새로이 인권을 보장을 위한 ‘정보기본권’ 구성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함

2. 정보인권에 관한 헌법개정 논의 경과

- 정보인권 관련 헌법개정 연대기 요약

시기	주요 내용
2017년 초	· 20대 국회 출범 이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개헌특위)구성 · ‘기본권·총강 분과’에서 정보화사회 대응 기본권(정보기본권, 생명권, 환경권 등) 신설 필요성 논의 시작
2017년 중반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에서 ‘정보기본권 신설 필요’를 공식 의제로 채택
2017년 하반기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구성 · 이 자문위에서 ‘디지털 정보화사회에서의 현대적 기본권 보장’ 필요성 언급
2018년 3월	· 문재인 정부 국회에 정부 헌법개정안 발의 · 헌법 제22조(신설)을 통해 정보기본권 요소 명시 · 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으로 폐기

가. 문재인정부 개헌안(2018년)

현행헌법	개정안
<신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개정 취지

-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정보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2018년 1월)

현행헌법	개정안
<신설>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정보문화향유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 취지

- 정보화 사회가 급진전되면서 현행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정보의 접근과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다수 사람들이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 정보독점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대사회에 맞게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독점 예방을 위한 국가적 의무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정보기본권은 인정되고 있으나(알 권리는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자유에서 각각 도출),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관련 권리 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신설함
 - 알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정보접근권’을 별도로 명시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었음
-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한 보호규정은 소극적이므로 본인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열람·정정·삭제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
- 국가의 정보격차 및 정보 집중으로 인한 피해 해소 노력의무 규정

- 정보 기술 및 정보 자원에서의 접근능력 부족은 지식정보의 결핍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참여의 박탈을 의미하므로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의 해소를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규정
- 정보권의 하나로 ‘정보문화향유권’ 규정
 - 신설 반대 의견 : 과학적 문화적 창작물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강하게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
 - 신설 찬성 의견 : 과학적 문화적 창작물은 인류가 쌓아온 업적에 토대를 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 창작자 개인의 작품으로 볼 수 없고 인류 공동자산으로 볼 수 있음. 의약품, 농산물 등의 경우 특허권 남용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해 생명을 잃기까지 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되, 국가가 사회경제적 약자의 정보문화향유를 지원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있음

다. 시민사회단체 개헌 제안(2018년 3월)

현행헌법	개정안
<신설>	제28조 ① 모든사람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누구든지 국가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및 공공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생산·기록하고 보존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알권리 보장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개정 취지
 - 현행 헌법에서는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소극적 권리,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정보의 개념에서 출발하는 2차적 권리만으로 정보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포함시켜 헌법을 현대 정보화 사회에 맞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 제1항 : 정보기본권이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생산,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와 그밖에 공공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모든 정보들에 대해 알권리와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이며, 법률을 통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함

- 제2항 : 알권리의 보장과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보의 존재와 그 정보의 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제2항을 통해 국가가 구성원들을 대리해 기능하고 행정을 제공하며 수반되어 발생하는 정보들을 공식적으로 생산·기록하고 보존하여 공개하는 의무를 명시함
- 정보문화향유권 관련 :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시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문화향유권’은 유엔 사회권규약 제15조가 보장하는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보기본권의 맥락에서 지나치게 확장되어 해당 헌법 조문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로 기본권 조항으로 분리하고 정보기본권 조항에서는 삭제하는 것을 제안함
- 제4항 : 향후 지속적인 기술의 발달이 예상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에 대한 정책적 노력에 대한 의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함

다.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보장 강화 헌법개정안(2017년)

현행헌법	개정안
<신설>	제25조 ① 모든 사람은 알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2018년)

현행헌법	개정안
<신설>	제30조 ① 모든 사람은 알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자기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④ 모든 사람은 정보문화향유권을 가진다. ⑤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 및 정보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공공의 문제에 관하여 누구나 자유롭고 효과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개정 취지

-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접근과 통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 정보독점의 폐해가 빈번한 상황임. 이에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독점 예방을 위한 국가적 의무를 신설하였음

- 제1항, 제2항 : 정보접근권이 알권리에 포함되어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명확하게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였음
- 제3항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자기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으로 명문화하였음
- 제4항 : 국제인권규범 등이 인정하고 있는 정보문화향유권을 도입하였음
 - 정보문화향유권 : 유엔 사회권규약 제15조가 보장하는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 제3세계 국가에서 HIV/AIDS 의약품 가격과 관련하여 의약품 접근권을 주장하는 관점에서 발전한 권리임
 - 제5항 : 정보 기술 및 정보 자원에서의 접근능력 부족은 지식정보의 결핍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참여의 박탈을 의미하므로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의 해소를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였음

3. 헌법 개정에서의 쟁점

가. 기존 개헌안 논의의 공통점

- ‘정보기본권’의 헌법 명문화 필요성에 대하여 전부 동의
 - 알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모두 채택함
- 정보격차·독점의 폐해에 대한 국가 책무를 다수 안이 명시하고 있음
- 사생활/통신 비밀에 머물지 않고, 접근·공개·통제 등 적극적 권리구조로 확장 필요성 인식

나. 차이점

- 정보접근권의 위상
 - 정보기본권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알권리 내 포섭할 것인지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안, 민변안, 시민사회안은 분리 명시로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안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알권리에 포섭하는 것 같음
- 정보문화향유권 포함여부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안, 민변안은 포함, 시민사회안은 별도 기본권으로 분리 하여 규정할 것을 제안
- 정부의 정보공개, 기록보존 의무 명시 강도
 - 시민사회안과 민변안은 적극 공개 의무를 조문으로 구체화함

- 조문 체계의 밀도
 - 정부안 및 국가인권위안은 간결하게 규정하고 있음. 민변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안은 정보기본권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안은 접근, 공개, 법률유보원칙을 촘촘히 규정하고 있음

다. 제안된 정보기본권의 내용에 대한 기존 논의 쟁점

-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 신설의 필요성
 - 정보화가 사회·권력 구조를 변화시킴. 국가와 기업의 정보독점·감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기본권’을 헌법에 명시해야함. 정보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며, 정보에 대한 접근권·통제권·공유권을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함
 - 신설 유보 의견
 -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정보접근권은 입법자의 입법활동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므로 신설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신설의 필요성
 - 사이버 공간 등에서의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 문제와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확산에 따른 위험 등이 대두되고 있어 정보주체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열람·정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부여가 필요함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인간 존엄의 핵심임. 헌법상 ‘정보통제권’ 조항 신설을 통하여 단순한 사생활권이 아니라, 데이터 생성·이용 전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으로 확대되어야 함
 - 신설 유보 의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현행 헌법 제17조에 포함되며, 일반적인 인격권을 통해 개인의 인격 보호가 가능하므로 헌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임
- 정보문화향유권
 - 신설의 필요성
 - 정보와 과학기술은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 영역에 포함되어야 함. 기술 발전의 혜택이 일부 집단에만 집중되면 ‘정보빈곤층’이 발생됨. 지식·데이터의 과도한 저작권·특허 독점은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침해함

- 그리고 인공지능에 의한 국가 권력의 감시기술에 대하여 헌법적 견제 장치로서 ‘정보기본권’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참 고 자 료]

1. 개헌 정책 토론회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2018년 3월 22일 시민단체 국회 토론회
2.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8년 1월.

토론1: 인공지능 환경과 정보인권의 헌법적 과제

- 장여경 상임이사(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유엔 빈곤과 인권 특별보고관은 사회복지 시에 대하여 분석하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한다고 비판하였다(A/74/493). 이 인공지능 시스템에서는 사회복지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사람을 거치지 않고 자동화된 질의응답만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특히 장애, 연령 등의 취약성을 가진 사람을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이 구성되고 전달되는 방식이 비인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결정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거나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인공지능 환경은 일반 인구집단의 행동에서 일반적으로 산출된 예측에 기반하여 개인의 권리에 미치는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의 기능이 대부분 불투명해서 인권 침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이런 인공지능의 활용이 불평등과 차별을 강화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인공지능 환경에 주목하여 헌법적으로 명시하고 해결해야 할 권리 쟁점을 제안한다.

1. 알 권리

- 종래의 알 권리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 측면에서 보장되어 왔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므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또한 알 권리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 자유권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고, 청구권적 성질은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집을 방해하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왔다.
-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채용, 보건의료, 사회복지, 경찰사법 등 개인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한 자동화된 결정이 확산되고 있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사람이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고 그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경우, 감시와 통제로 인간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무시하는 경우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인공지능의 경우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검증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공적인 감사를 촉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의 인권 책무 또한 확보할 수 있다¹.

- 유엔 사무총장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배포에 관한 결정에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공공 부문에서 인공지능이 지원하는 결정에 대한 적절한 설명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불투명한 권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과 이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하여 그 대상이 되는 영향 받는 사람이 자신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민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2024년 인공지능에 관한 최초의 유엔 결의안에서도 “최종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거나 지원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전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투명성, 예측 가능성, 신뢰성 및 이해 가능성을 촉진”할 것을 회원국에 독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통지(notice)와 설명(explanation)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감독(human oversight)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².
- 따라서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의사 표현의 자유와 별도로 알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종래의 대국가 청구권적 의미를 넘어서는 개인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범용AI가 개인정보 보호에 초래하는 위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과학보고서>는 이를 학습 위험, 사용 위험, 악의적 피해 위험으로 구분하였다³. 학습 위험의 경우 범용AI가 학습 데이터 중 일부를 암기하여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추론하는 위험을 말한다. 정보주체가 알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문제도 있다. 사용 위험의 경우 인공지능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배치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용되는 문제이다. 악의적 피해 위험은 악의적인 사용자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사이버 공격에 사용되거나, 공개하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속성을 추론하거나, 스토킹 행위를 심화하거나,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상황 등이 있다. 과학보고서는 범용AI에서 학습 위험과 사용 위험을 감소시키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양하게 제안했으며, 최소화 원칙, 목적 제한 원칙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인공지능은 기존의 컴퓨터 시스템과 달리 탁월한 ‘추론’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추론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결정을 내릴 때 인권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여러

¹ EDPS. (2023). TechDispatch #2/2023 -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pp.6-7.

² Seizing the opportunities of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4.3.11). 유엔문서 A/78/L.49. para.6(k).

³ Yoshua Bengio, et al. (2025).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Report on the Safety of Advanced AI Scientific Report. pp.139-143.

인공지능시스템이 성적 지향, 정치적 선호, 소득, 미래의 범죄 가능성 등 민감한 추론을 내리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개인이 공개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추론하거나 잘못된 추론을 낼 수 있다. 경찰, 의료, 교육, 고용 등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사람에 대한 의사결정을 자동화하거나 지원하는 인공지능이, 잘못되거나 불투명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사용하는 얼굴인식 기술이 사람을 잘못 판단하여 억울한 사람이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인공지능의 추론과 예측 기능이, 사람들의 자율성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립할 권리를 포함하여, 프라이버시권의 향유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 공정한 재판 관련 권리 등 다른 권리에도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⁴
- OECD는 인공지능이 성적 지향, 정치적 선호, 소득, 미래의 범죄 가능성 등 개인에게 매우 민감한 추론을 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는 사생활 권리 뿐 아니라 자동화된 차별을 양산하며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는 데 남용될 수도 있다. 생체인식 기술의 사용은 이러한 위험을 증폭시킨다. 얼굴 인식 문제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지만 동작, 보행, 심장 박동과 같은 특성을 통해 식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공지능 감시를 통해 직장에서 과거보다 심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고, 공공장소에서 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개인이나 집단을 표적으로 삼아 차별하는 감시도 이루어질 수 있다⁵.
- ILO 역시 최근 직장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전례 없는 정교함, 속도, 규모로 노동자의 생각, 감정, 생리적 상태 역시 추적 및 분석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특정 행동 또한 예측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노동자별로 평가할 수 있는 개인 프로파일링이 생성되면 과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준과 은밀하게 비교하는 일도 생겨났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친분 관계에 기반하여 노동조합 결성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노동자의 억양이나 주소지를 업무 신뢰성과 연관짓는 식이다⁶.
- 인공지능의 감시와 추론은 과거의 감시보다 더 방대하게 감시하며, 생체인식정보나 특정 행동 등 개인의 더 개인적인 특성, 심지어 개인의 감정이나 인간관계 등 매우 사적인 특성에 대한 침습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헌법적으로 명시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⁴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1. 9. 13. 유엔문서 A/HRC/48/31.

⁵ OECD. (2024). Assessing Potential Future Artificial Intelligence Risks, Benefits and Policy Imperatives. OECD Artificial Intelligence Papers, No.27. p.24.

⁶ ILO. (2025). Navigating workers' data rights in the digital age: A historical, current, and future perspective on workers' data protection. ILO Working Paper 149.

3. 평등권과 차별금지

- 최근에는 인공지능에 의한 판단과 결정에서도 인간과 유사한 편향이나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을 기계 편향(Machine Bia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⁷. 유엔 사무총장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기존 사회의 편견과 편향을 강화하여 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데이터 기반 도구는 종종 인간의 편견과 편향을 코드화하며, 이러한 편견과 편향의 대상인 여성과 소수자 및 취약 계층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기반한 알고리즘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편향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과 영향력을 해결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A/HRC/43/29).
- 인공지능의 편향이 실제 현실로 이어져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특정 집단이나 관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적 결과를 낳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국제 인권 규범과 법률이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공공과 민간의 주요 영역에서 개발되고 활용되는 인공지능이 인종, 성별, 문화, 연령, 장애, 정치적 견해 등 다양한 인간 정체성과 관련해 편향된 결과를 산출하고 차별적 대우를 낳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결과에서 국내외 인권규범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간접적 차별이 실행되는 것이다. 인종과 같은 차별 속성을 의도적으로 직접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우편번호 등 차별 속성과 상관관계가 높은 대리변수(proxy)를 통해 비의도적으로 간접적인 차별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 인공지능의 편향과 차별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보고서는 인공지능의 편향이 발생하는 데에는 학습데이터나 알고리즘 설계와 관련된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설명한다. 인공지능이 사용한 데이터에 내포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편향이 그 결과물에 반영되면 인공지능의 결과물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또한 사회적 차별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실제로 미국 경찰의 경우 여러 번 무고한 흑인을 체포해서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사람이 내리는 결정도 차별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인공지능의 결정이 차별적인 경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다
-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에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인공지능이 이런 편향을 학습하고 증폭시킨다는 점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헌법적으로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현재의 예시적 조항을 넘어 보다 다양한 차별 사유를 명시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차별 금지와 조치 의무를 강화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끝)

⁷ 국가인권위원회 삼임위원회. (2020. 4. 2).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

토론2: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2025년 헌법개정에서 담아야할 과제

- 김예찬 활동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발제문을 통해 그동안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정보기본권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토론자로서 저는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에 집중하여, 2018년과 2025년을 가르는 핵심 변화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쟁점들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2025년, 알권리 위기의 현실

윤석열 정부 3년은 시민의 알권리가 무너지는 시기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를 초청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초청자 명단을 파기했다고 둘러댔습니다. 명단 파기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이번에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중이라 말을 바꿨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수의계약 사실이 논란이 되자 재빨리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수의계약 정보를 감춰버렸습니다. 공공기관이면 당연히 공개해야 할 직원 명단, 업무 규정, 업무추진비 등 예산 내역을 숨기며 정보공개 기본원칙을 외면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알권리를 외면하자 다른 공공기관 역시 정보공개 의무를 방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책임한 비공개를 남발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조직도에서 공무원 이름을 삭제하여 정책실명제를 무력화시켰고, 공공기관에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자체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악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2025년의 현실입니다. 2018년 우리가 논의했던 정보기본권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2. 과거와 현재: 무엇이 바뀌었는가

(1) 2018년: 데이터 사회의 도래

2018년 당시 우리는 데이터 사회의 도래를 전제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격차 해소를 논의했습니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당시 논의의 초점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동의권,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청구권,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알고리즘 사회의 현실

2025년 현재, 우리는 알고리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복지 수급 자격 판단, 신용등급 산정, 세금 부과, 채용 면접 심사, 보험료 산정 등 우리 삶의 중요한 공공행정 서비스들이 점점 더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이 이러한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알 수 없고,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설명을 들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복지 신청은 거부되었습니다." "당신의 신용등급은 7등급입니다." "당신은 AI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시스템은 결과만 통보할 뿐,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공개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근간인 적법절차가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8년 개헌 논의가 던진 질문에 더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나에게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는 그 이유를 알 권리가 있는가? 나는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나는 인간의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가?

3. 세 가지 핵심 쟁점: 전통적 알권리의 강화

AI 시대의 새로운 권리를 논하기 전에, 먼저 2018년 개헌 논의에서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1) 알권리에서 정보접근권으로

발제문에서 보신 것처럼, 2018년 문재인 정부 개정안은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고만 규정했습니다. 반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안과 시민사회안은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분리하여 명시했습니다.

알권리는 추상적 권리입니다. 1989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한 이후 36년간 우리는 해석을 통해 알권리를 보장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해석으로 보장된 권리는 해석으로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정보접근권은 구체적 권리입니다. 누가, 어떤 정보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2018년 정보인권단체들이 제안했듯이, "누구든지 국가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및 공공에 공개된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권리"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80개 이상의 국가가 헌법에 정보접근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헌법 제12조는 "공공 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기록은 법률로 공개가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공개되며, 누구든지 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브라질, 벨기에, 에스토니아, 헝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알권리라는 추상적 선언을 넘어 정보접근권이라는 구체적 권리를 헌법에 새겨야 합니다.

(2) 정보가 없으면 알권리도 없다: 국가의 기록 의무

2018년 정보인권단체들은 한 발 더 나아가 국가의 의무를 명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생산·기록하고 보존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가 존재할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가가 정보를 애초에 생산하지 않거나,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다면 알권리는 공허한 권리가 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오랜 사회적 갈등을 빚었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경우 의대 정원 배정을 결정한 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내역이 3개월 만에 삭제되었습니다. 12·3 계엄 관련 CCTV 기록들이 폐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권리는 있지만 정작 알기 위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 반복된 것입니다.

국가는 시민들에게 의사결정과 행정에 대한 설명책임 의무를 가집니다. 정보의 생산·기록과 보존, 공개 의무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길입니다.

(3) 자의적 비공개를 막는 방패: 법률유보 원칙

정보인권단체들이 제안한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법률유보 원칙의 명시입니다.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는 문구입니다.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는 8가지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들의 해석이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공정한 수행" 같은 추상적 개념은 자의적 비공개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정원 등 정보기관에 대한 특례입니다. 정보공개법 제4조 3항은 이들 기관이 수집·생산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포괄적 비밀 추정을 허용합니다. 이는 "공개가 원칙, 비공개가 예외"라는 법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는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낸 바 있습니다. '악의성'의 여부나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정보공개를 차단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법안이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정보공개제도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위기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확한 제한 원칙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는 문구는 자의적 제한을 막고, 비공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강제하며, 입법자에게 신중한 입법 의무를 부과할 것입니다.

4. 알고리즘 시대의 새로운 권리: 설명책임성에서 알고리즘 투명성으로

(1) 세계의 헌법적 대응: 알고리즘 투명성의 권리화

알고리즘에 의한 공공 의사결정의 확산에 대해, 해외에서는 이를 헌법적 권리의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AI 알고리즘 투명성'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헌법개정안이 2023년 발의되었습니다. 비록 소셜미디어 중독과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구체적 투명성 정책은 부재하지만, 알고리즘 투명성을 기본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헌법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스페인 대법원은 2025년 9월 시민단체 Civio가 7년간 싸워온 소송에서 정부의 복지 급여 판단 알고리즘 BOSCO의 소스코드 공개를 명령하는 획기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알고리즘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요구에서 도출되고 민주국가와 불가분하게 연결된 헌법적 권리다." "자동화된 결정이 시민 권리의 인정이나 거부를 결정하는 경우, 알고리즘의 구성과 사용은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며 투명성을 요구한다." 법원은 투명성은 단순히 법률의 한 조항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알고리즘 책임법이 세 차례 발의되며 투명성, 이의제기권, 설명 요구권을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4년 발효된 AI법을 통해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의무를 법제화하고, 유럽 알고리즘 투명성 센터를 설립해 실질적 감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알고리즘 시대의 투명성과 설명 요구권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는 것입니다.

(2) 한국 헌법이 담아야 할 두 가지 차원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보면, 우리 헌법개정 논의는 두 가지 차원에서 확장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정보의 공개에서 과정의 공개로의 확장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문서, 데이터, 기록에 접근할 권리 말입니다. 하지만 알고리즘 시대에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정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책임성입니다.

정보접근권과 설명책임성은 다릅니다. 정보접근권이 이미 존재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라면, 설명책임성은 결정 과정 자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서가 있는가"를 넘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국가는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결정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헌법은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국가는 행정 결정에 대해 그 과정과 이유를 설명할 의무를 진다."

두 번째 차원은 과정에서 알고리즘으로의 확장입니다. 행정 결정이 인간에 의해 이루어질 때는 회의록, 결재 문서, 검토 의견 등을 통해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알고리즘의 투명성은 소스코드, 데이터, 알고리즘 구조의 공개입니다. 반면 설명가능성은 일반 시민도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투명성이 단순히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이라면,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는 시민에게는 무의미합니다. 코드를 이해하려면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는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보의 평등과 적법절차 원칙이 무너집니다.

전통적인 행정의 적법절차가 절차의 투명성과 결정의 정당화를 요구했듯이, 알고리즘 시대의 적법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알고리즘이 나에게 대한 결정을 내렸는가? 그 알고리즘은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가?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가?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필요시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3) 2025년 헌법에 담아야 할 권리

따라서 2025년 헌법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권리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행정 설명책임의 헌법화입니다. "국가는 행정 결정에 대해 그 과정과 이유를 설명할 의무를 진다."

둘째, 알고리즘 투명성권입니다. "공공기관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시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와 사용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설명 요구권입니다. "시민은 공공기관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이해 가능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넷째, 이의제기 및 인간 개입 요구권입니다. "시민은 알고리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요한 결정에서 인간의 개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섯째, 알고리즘 차별 금지입니다. "알고리즘은 인종, 성별, 나이,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적 결과를 산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알고리즘 시대의 디지털 적법절차입니다. 스페인 대법원이 선언했듯이, 이는 민주주의와 불가분하게 연결된 헌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할 시민의 존엄성과 자율성의 문제입니다.

5. 권리의 주체: "모든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

마지막으로 짧지만 중요한 쟁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외국인 유가족들은 희생자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구급일지를 제대로 발급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재외동포 유가족은 구급일지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대상자가 아니라며 거부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보공개법의 청구권자가 '국민'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당시 정부 개헌안에서도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었습니다. 반면 국회안과 시민사회안은 알권리의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명시했습니다.

정보접근권은 표현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보편적 인권입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제19조는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우루과이, 루마니아, 스위스,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브라질 등 수많은 나라가 정보공개 청구권자를 '국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헌법개정에서는 "모든 사람"으로 명시하여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이 보편적 인권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6. 결론: 2025년 헌법개정의 과제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은 알권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보기본권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하는 이유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2018년 개헌 논의가 남긴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알권리에서 정보접근권으로의 구체화, 국가의 정보 생산·기록·보존 의무, 그리고 법률유보 원칙입니다.

2025년이 요구하는 확장도 있습니다. 정보에서 과정으로 나아가 행정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책임성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과정에서 알고리즘으로 나아가 알고리즘 투명성과 설명 요구권을 헌법적 권리로 정식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권리를 보편적 권리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명시하여 국적을 넘어선 보편적 인권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3: 정보문화 향유권과 과학·문화권

- 윤희기 연구원(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문화향유권과 과학·문화권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정보문화 향유권

정보문화향유권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제안한대로 헌법에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심사에 있어서 정보나 지식을 전파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 하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호하는 반면 정보나 지식에 접근하거나 이를 습득할 권리에 대해서는 강하게 보호하지 않아왔다. 예를 들어, 게임셴다운제 결정에서도 게임이용자들 특히 청소년들이 게임을 이용할 자유에 대해서는 심사가 거의 부재하였고 게임제공사들의 자유에 대해서만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게임제공사들의 표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표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호되어 셴다운제도의 결정이 합헌으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또 정보문화향유권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기계적인 남용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최근 공직자들이 자신에 대한 언론취재보도 및 내부고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남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조항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되 타인의 동의없이도 그 사람의 악행을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15조 등)가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그와 같은 균형을 모두 탈각시킨 별도 조항들(58조) 만들어 정보의 흐름 자체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정보문화향유권은 언론인이나 내부고발자의 표현의 자유 외에도 이와 같은 내부고발이나 보도를 접할 언론수용자나 국민의 권리를 포함하는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대법원이 실질적인 판결문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아래 발표는 주로 과학문화권에 대해 할애한다.

과학·문화권

과학·문화권은 국내에서 아직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국제적으로는 유엔인권기구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과학·문화권은 사회권규약 제15조 제1항 (c) 및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2항의 저자 조항 (Author Clause)를 포함한다. 정보문화향유권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정보문화향유권은 그 필요성에 따라 별도의 명시를 요구한다.

과학·문화권은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다면적인 권리로서, 개인의 자기개발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공공의 선을 위한 과학의 진보를 장려하는 제도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자유권적 기본권과도 관련이 있다.

과학·문화권은 지식재산권의 내재적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분배에 관한 대안적 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지식재산권은 인권 개념의 포섭대상 밖 또는 대립적 구조에서 다루어졌다. 그래서 기본권과 지식재산권의 충돌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프라이버시권과 지식재산권 집행의 충돌 등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권이 지식재산권의 무분별한 팽창을 외부에서 저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 되었다. 이에 반해 과학·문화권은 지식재산권을 기본권의 일부로 포섭하고 지식재산권의 내재적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컨대, 기본권으로서의 지식재산권과 실정법 상의 지적재산권의 경계를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계는 그 동안 현행 헌법 하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기도 하다.

국제인권규범 상의 과학·문화권

가. 관련 조문

[세계인권선언 제27조]

- ①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회권규약 제15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

나. 저자 조항 (Author Clause)

과학·문화권의 저자는 저작권법의 저자보다 그 범위가 크게 넓지는 않다. 도리어 과학·문화권에서 저자에게 기본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이유가 저자와 저작물 간의 인적 고리(personal link) 때문에 과학·문화권의 저자는 자연인만 될 수 있고 법인은 저자가 될 수 없다.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 법인을 저자로 인정하는 현행 저작권법과의 차이가 있다.

과학적·문학적·예술적 창작물은 저작권에 대응하는 문학적·예술적 창작물과 특허권에 대응하는 과학적 창작물로 편의상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학적 창작물은 특허법상의 발명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특허법상 보호대상이 아닌 과학적 간행물(publication), 기술혁신, 토착민의 지식, 혁신, 관행도 포함한다

정신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는 저자 조항을 논의할 때 초안자들의 주된 관심 대상이었다. 지적 창작물은 저자의 개성의 표현이고, 따라서 창작물의 정신적 이익의 보호는 창작물과 저자를 이어주는 필수적 수단으로 보았다. 또한 초안자들은 당시에 존재하던 국제조약 즉, 베른협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저자의 정신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란 베른협약에서 인정하는 저작인격권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는 정신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에 비해 그 내용과 범위가 상대적으로 덜 명확하다. 크게 세계인권선언 제17조의 재산권과 연관시키는 입장과 사회권 규약 제11조의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연관시키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의 내재적 한계를 강조하는 입장이나 유엔 인권기구는 저자가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는 재산권 보다는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더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고 본다. 중요한 점은 재산권과 연관시키는 경우에도 현행 지식재산권법에서 인정하는 모든 권리가 저자의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물질적 이익이란 모든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지 않으며, 경제적 효율성이나 공리주의의 목적과 물질적 이익은 다르다는 것이다. 조약 입법경위를 살펴보더라도, 물질적 이익은 지적 노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라는 좁은 의미의 경제적 권리를 말한다. 과학·문화권의 저자 조항에서 인정되는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이렇게 해석할 경우, 배타적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를 보상 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권리로 변용하는 제도 개혁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자를 과도하게 주장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저작권합의금장사’에 대한 대응을 해오는 한편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 20여개국에서 저작권권과 유사하게 집행되고 있는 ‘양도불가 창작자권리’의 입법을 제안해왔다.

다.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기본적 인권이라고 하려면, 특히 모든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일정한 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려면, 문화생활이 무엇인지 특정할 필요가 있다. &문화생활&에서 말하는 &문화&는 대중문화와 대비되는 의미의 고급 문화나 예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는 2008년 5월 사회권 규약 제15조 제1항(a)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고, 이를 토대로 2009년 12월 일반논평 21호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문화생활&에서 말하는 문화는 인류학적 관점의 문화 즉,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전개되는 역사적이며 동태적인 &살아움직이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화생활 또는 문화를 너무 넓게 정의하면 인권으로서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는 그 외연이 지나치게 넓어져 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참여&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데, 일반논평 21호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세 가지 핵심요소, (1) 문화생활에 참가(participation), (2) 문화생활에 접근(access), (3) 문화생활에 기여(contribution)로 구성된다고 한다.

여기서 참가는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생활에 참여하는 일반적 의미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결정에 의미있는 참가와 같은 적극적인 의미도 갖는다. 접근(access)은 자신의 문화를 알고 이해하며 교육과 정보를 통해 다른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여는 &공동체의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정적 표현&을 창작하는 활동에 관여할 권리를 포함한다. 기여는 &공동체의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정적 표현&을 창작하는 활동에 관여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 3가지 요소 중 지식재산권과의 관계에서는 &접근&이 가장 핵심이며,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자는 제안자들에게 가장 필수적이었다. &과학권&과 함께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용어는 지식접근권(right to access to knowledge)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문화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말은 모든 사람은 지식, 예술, 문학, 작품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접근을 제약하는 지적재산권의 속성은 문화권과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라.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과학의 개념에 대해서는 단순히 기술이나 자연과학과 같은 좁은 의미가 아니라 사회과학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검증과 반박이 가능한 지식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이다.

이익은 물질적, 비물질적 이익 모두를 말한다. 이익의 향유는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소수자나 취약계층 뿐 아니라 과학적 진보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과학권에서 말하는 &이익을 향유할 권리&는 이른바 낙수효과에 의해 과학적 진보로 인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의미의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로 현실화 될 것을 말한다.

과학·문화권을 위 제안 조문

현행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 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회 개헌특위 제안

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 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한다.

제28조 ③ 모든 사람은 정보문화향유권을 가진다.

제33조 ⑤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오픈넷 제안

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와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사람은 자신이 저자인 과학적, 문화적, 예술적 창작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③ 모든 사람은 정보문화향유권을 가진다.

결론

과학 문화권과 정보문화향유권의 신설을 통해 헌법 전문이나 문화국가 원리 조항의 추상성을 넘어, 정보취득자/문화향유자의 권리가 무시되는 사례, 개인정보보호법의 남용, 지재권의 남용 사례들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 헌법 규범을 마련하자. 특히 과학권의 신설을 통해 과학과 기술의 이익의 사회적 분배까지 도모해보자.

토론5: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희우 활동가(디지털정의 네트워크)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의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2005년 5월 26일 선고한 결정에서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독자적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권리를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했다. 또한 보호대상에 있어 단순히 사생활의 비밀을 지키는 소극적 권리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를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두되 어느 한 조문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보았다.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기존 헌법에 내재되어 있으나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비성문적 기본권으로, 급변하는 정보환경 속에서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인권 개념이다.

이 결정은 20세기 후반,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수집·처리·결합이 인간의 통제를 넘어 자동화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위험에 대한 헌법적 대응이었다. 행정 효율성과 편의성의 명분 아래 정보기술이 국가의 감시능력과 기업의 데이터 수집 역량을 비약적으로 확대시켰고 개인의 정보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적되고 결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또한 당시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가의 감시능력이 현격히 증대되어 개인의 일상사가 낱알이 파악될 수 있게 되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단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가 아니라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로서 필요성을 확인한 것이다.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관련 기존 개헌안

이러한 논의는 이후 헌법 개정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2018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고 제안했으며 정부 개헌안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개헌안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세 안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명문화할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의 개헌 제안 또한 같은 취지였다. 정보공유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당시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모든 사람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명문화하고 국가는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독점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기존 헌법의 사생활 보호 규정만으로는 정보의 접근과 통제가 어려워진 현실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전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였다.

3. 헌법상 명문화의 필요성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드러내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자동화·프로파일링·추론 기능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며 직접 제공하지 않은 데이터나 비식별 정보로부터 새로운 개인정보를 추론해 이를 근거로 자동화된 결정을 내린다. 그런데 채용, 신용평가, 복지, 의료, 사법 등 삶의 주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인공지능의 결정은 투명하지 않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 과정에 대해 직접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은 개인의 통제권을 더욱 무력화시키고 있다.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알기 어렵고 플랫폼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이러한 알고리즘 구조를 ‘영업비밀’이나 ‘기술 보호’ 명목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처럼 정보주체의 통제력이 보장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더 이상 선언적 권리로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의 권력 구조에 맞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헌법적 장치와 제도적 재구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기본권 특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명문화 된다는 것은 기존의 헌법 해석 및 법률 규정 등과 다른 차원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 인공지능이 비식별정보와 프로파일링, 추론 데이터까지 생성·활용하는 현실에서 정보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통제권이 새롭게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정보 자체에 대한 권리, 감시권,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오·남용과 부정확한 추론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까지 포함해야 한다.

또한 오늘날 정보는 유형물로 존재하지 않고 디지털화되어 생성·결합·삭제되기에 헌법적 보호는 그 처리 과정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 정보의 수집·가공·전송 단계에서부터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빅테크 중심의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사적 자산이 아니라 자본 산업의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산업화된 데이터는 감시와 차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은 이러한 현실에 대응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하는 핵심 기본권으로 명시해야 한다.

기존의 헌법 개정 제안을 보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안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문재인 정부 개헌안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개헌안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도 명시하고 있는데, 후자와 같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도 명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

참고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은 제7조에서 사생활 및 가족생활의 존중 권리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와 별개의 조항으로 제8조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7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의 존중)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과 가족생활, 주거 및 통신에 대해 존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1.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개인정보는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그 밖의 적법한 근거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하여 수집된 정보에 접근하고 그 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이러한 규칙의 준수는 독립적인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

한편, 기존의 제안들은 알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격차 및 독점의 폐해에 대한 국가의 책무 조항을 정보기본권 조항에 포섭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식이 적절할지 아니면 내용에 따라 기존의 관련 조항에 포섭하는게 좋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경우 기존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제17조에 통합하던가, 아니면 제18조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만을 따로 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알권리나 정보접근권을 제21조에 포섭하던가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며, 정보문화향유권도 제22조와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명문화는 정보화 사회의 현실에 부응해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국가는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헌법은 정보화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본권 질서를 제시해 디지털 사회가 여전히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에 둘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것이다.

토론: 정보기본권 헌법보장의 필요성

- 장선미 운영위원(참여연대)

향후 개헌에서 정보인권의 헌법 명문화 논의를 알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격차 해소 의무 등을 망라하여, 개헌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인과 관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최호웅 변호사님의 발표를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헌법상 정보인권 관련 논의는 기술발전에 대한 대응의 문제를 넘어, 인간이 기술에 의해 통제되는 시대에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인간은 알고리즘과 데이터 처리 시스템 속에서 분석되고 예측되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술의 불투명성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은 헌법이 전제해온 자유와 평등의 구조를 흔들고 있으며, 규제 없는 알고리즘의 확산은 권리의 기준을 자본과 기술이 정하는 새로운 ‘기술결정주의적 헌정질서’로 나아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단순한 사생활의 문제를 넘어 인간이 데이터 처리의 전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헌법적 근거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사회는 종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무관해보였던 기본권 보호영역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의 중첩적 보장을 통해서만 인간의 기본권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이 지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예로 알고리즘 노무관리를 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수행, 감정, 건강, 행동 패턴이 데이터로 수집되고 분석되는 환경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노동권의 실질적 구성요소로 기능합니다. 알고리즘 노무관리 하의 노동권 보장은 정보권과 분리될 수 없으며, 노동자는 자신에 관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방식에 대해 알 권리뿐 아니라, 그 데이터에 접근하고 수정·삭제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헌법 제32조와 제33조가 전제하는 존엄한 노동의 보장은 이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정보통제권의 실질적 확보 없이는 완결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노동기본권의 실효성을 매개하며, 디지털 전환이 낳은 새로운 노동 환경에서 노동권과 정보권은 상호의존적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최호웅 변호사의 발제문이 보여준 바와 같이, 2018년 이후 이어진 헌법개정 논의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들은 정보와 노동, 사생활과 경제활동을 별개의 권리영역으로

전제한 채 논의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그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별개의 보호영역에서만 문제되지 않으며, 노동권·평등권·인격권·사회권과 중첩적으로 작용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가 해당 주체의 다른 기본권 보장에서 함께 보장됨으로써 모든 기본권의 보장이 가능한 상황이 기술사회에서 주류적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 즉 디지털 전환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다른 기본권의 상호 작용적이고 중첩적인 권리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개헌 논의에서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이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때, 그 공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만의 공백이 아닌 인간의 존엄이 침해되는 다양한 양상의 기본권 침해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 논의는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그것이 노동기본권 등 다른 기본권과 어떻게 구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를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 제32조의 ‘존엄한 노동’ 보장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과 결합될 때 비로소 완결되며, 노동자의 데이터 접근권과 통제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헌법 제33조의 단체협약과 단체행동에서 사용자의 노무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공개가 의제가 되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타 기본권에 정보권과 연계된 내용을 명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정보인권이 다른 인권의 구성요소로 편입되고, 다른 인권이 정보인권의 실질적 적용영역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정보기본권과 다른 기본권의 ‘컨버전스(convergence)’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시대의 헌법은 정보권의 확장을 넘어, 기본권의 교차적 구조화를 통해 인간의 존엄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리즘 사회 내지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사회(algocracy)에서 인간의 존엄은 정보권과 헌법상 다른 기본권이 상호작용하는 다층적 보호체계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헌법은 데이터 주체로서의 인간을 보호함과 동시에, 그 인간이 사회 내에서 다양한 인권을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권의 강화는 다른 기본권의 강화이며, 디지털 헌정질서의 새로운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연속토론회>
디지털 시대 정보기본권 강화를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발행일 2025.11. 11.

발행처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담당 서채완 공동사무처장 010-4150-4347
chaewan.s@minbyun.or.kr